

창업지원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청 선정 창업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속 창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지원단은 제1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입주기업과 학생 및 일반인 창업을 지원하여 캠퍼스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
2. 창업동아리, 창업강좌, 기술창업아카데미,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등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3. 지역 신기술개발 관련업체,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관련 연구소간의 산학협동 활성화
4. 실용신안과 특허 출원을 위한 행정지원
5. 우수입주업체에 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지원 모색
6.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추진
7. 그 밖에 지원단의 창업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개발 창업 지원 사업 : 신기술 관련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시장성, 경영, 기술, 세무, 디자인에 관한 상담과 아울러 필요한 일정기간의 지원과 지원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신기술 제품 개발 :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신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과 결과물을 찾아내는 활동
3. 창업지원실: 예비창업자, 창업자, 창업동아리 등에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
4. 창업보육실: 예비창업자, 창업자, 창업동아리 등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공간
5. 입주자 : 입주 승인 절차를 거쳐 입주 계약을 맺고 신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6. 졸업 : 입주자와 입주계약 만료 및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여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어 창업이 가능하게 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는 것
7. 퇴거 :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사항 위반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당해 입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
8. 예비입주자 : 창업지원실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단에서 승인한 입주자
9. 입주개시일 : 창업지원실 입주계약서에서 정한 입주기간이 기산되는 날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조직 및 업무) ① 지원단에는 창업유전자개발센터, 창업교육부, 기술창업육성부, 창업보육센터 및 행정팀을 둔다.

② 창업유전자개발센터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 청년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분위기 조성과 창업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행사개최를 통

또는 제작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결과물을 실태조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졸업자에 대하여 타 사업 우선지원, 지도 및 육성자금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연계지원 등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창업보육수수료) ① 지원단은 입주자 또는 졸업자에 대하여 창업보육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② 창업보육수수료의 부과시기와 그 징수방법은 지원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5조(부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재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단 운영요령』과 우리 대학교 관련규정 및 사무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